

# 정보보호 규정

- 제정 : 2003. 1. 1.
- 개정 : 2011. 6. 30.
- 개정 : 2013. 10. 29.
- 개정 : 2015. 5. 7.
- 개정 : 2018. 3. 1.
- 개정 : 2019. 3. 1.
- 개정 : 2019. 6. 18.

**제1조(목적)** 정보보호규정(이하 “본 규정”이라 한다)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정보자산에 대하여 침해사고 및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, 정보보호의 무결성, 가용성, 기밀성을 유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 규정은 본교가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정보자산 및 관련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, 내부 교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정보자산”이라 함은 정보통신 설비 중 라우터, QoS, 백본, DNS, 스위치, 웹서버, DB서버, 기타 서버, 정보보안시스템, 정보시스템 등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.
2. “정보보안” 또는 “정보보호”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적, 물리적,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.
3. “침해사고” 또는 “보안사고”라 함은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 등으로 인하여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방해, 정보의 유출, 파괴, 위조 및 변조 등이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.
4. “개인정보”라 함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에 의해 개인정보로 정의된 정보를 말한다.
5. “정보시스템”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, 가공, 저장, 검색, 송신,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.

**제4조(정보보호규정의 수립 및 승인)** ① 본 규정은 ‘정보보안심사위원회’의 심의 및 ‘규정심사위원회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정보보안담당자는 본교의 정보보안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본 규정은 법률을 비롯한 상위조직 및 관련 기관의 정책과 연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④ 본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지침, 절차를 수립 할 수 있으며, 관련 문서 간에는 일관

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⑤ 규정 시행에 따른 운영기록을 생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.

⑥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, 새로운 위협 또는 취약성의 발견, 정보보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 제·개정하여야 한다.

⑦ 정보보안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규정 및 정책 시행문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된 규정에 대하여 '정보보안심사위원회'의 심의 및 '규정심사위원회'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5조(정보보호규정의 공표)**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제4조에 따라 승인한 본 규정을 공표한다.

② 본 규정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,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정보보안담당관의 지정)**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본교의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7조(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자의 의무와 책임)**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정보보호규정 수립
2. 정보보호조직의 구성
3. 연간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의 수립·시행하고, 그 추진결과를 심사분석·평가
4. 정보보안심사위원회 운영
5. 침해사고 대응·복구
6. 기타 그 밖의 정보보안관련 관리활동

② 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며,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자로 정보보안담당관이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8조 (개인정보보호)**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본교 규정 '개인정보관리규정'을 따른다.

**제9조 (정보보안 기본지침)** ①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 조항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"정보보안 기본지침"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